

수원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가단5270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3. 29. 접수 제526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2. 12. 원고로부터 4억 9,600만 원을 약정이자율 연 6%, 연체이자율 연 15%까지 가산, 대출만료일 2017. 6. 12.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017. 3. 12.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다.

나. D은 2018. 3. 28. 배우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3. 29. 접수 제526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은 2018. 3. 28. 기준으로 합계 592,862,68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2258호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9. 10. 12.경 D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9. 18.경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9. 10. 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9. 10. 12.경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왔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D이 592,862,685원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D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동[도로명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9.9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대 23339㎡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23,339분의 31.9685

- 이 상 -

